

2020년 제4차 이사회 의사록

I 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일시: 2020. 10. 8.(목) 16:00 ~ 18:00

장소: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2. 참석현황

참석이사: 전수안(이사장), 권오규, 김병섭, 김형준, 남궁근, 박백범(代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박현애, 여정성, 오세정, 이기형, 지은희, 최창원,
홍기현 (이상 13명)

불참이사: 안일환, 한호성 (이상 2명)

참석감사: 이병률, 윤현철 (이상 2명)

배 석: 강준호(기획처장), 김용진(연구처장), 노혁준(기획부처장)

3. 회의안건

보고사항

제1호. 4단계 BK21사업 예비선정 결과 보고

제2호.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제3호. 서울대법 개정안 의원 발의 현황

심의·의결사항

제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제2호. 이사후보초빙위원회 이사위원 구성(안)

기타사항

제1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II 회의 내용

1. 개회

- 전수안 이사장이 성원을 확인한 후 오후 4시에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 강준호 기획처장이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하고, 전수안 이사장이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보고사항

제1호. 4단계 BK21사업 예비선정 결과 보고

□ 주요내용

- 김용진 연구처장이 4단계 BK21사업 예비선정 결과를 보고함
 - 총 46개 교육연구단(팀)이 선정되어 3단계 BK21사업 대비 선정 단(팀)수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국 최다 선정에 해당함
 - 4단계 BK21사업부터 대학원 국제 경쟁력 강화, 연구 환경 및 질 개선, 대학원 교육개선, 대학원생 복지 개선 등을 위해 대학원혁신사업이 신설되었음

제2호.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 주요내용

- 강준호 기획처장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경과를 보고함
 - 학업고충 경감 지원을 위한 긴급학업장려금(학부 재학생 대상)과 경제적 고충 경감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장학금(학부대학원 재학생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규모는 30억 원으로 이는 2020학년도 1학기에 납부한 학부 수업료 본인 부담액의 10%에 해당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제3호. 서울대법 개정안 의원 발의 현황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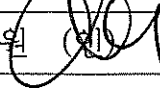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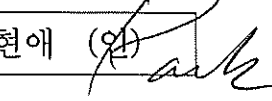
- 강준호 기획처장이 서울대법 개정안 의원 발의 현황을 보고함
 - 평의원회 구성 관련 의원안 발의 현황(조승래·전혜숙·정청래)과 잉여금 관련 의원안 발의 현황(정청래)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학교의 의견을 보고함
 - (평의원회 구성 관련) 대표기관별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였고, (잉여금 관련) 자체적인 적립금 지침을 마련 중임을 보고함

3. 심의의결사항

제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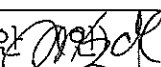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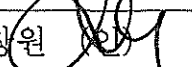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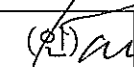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수익사업의 범위 조항에 “국내외 자회사(상법상 자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및 투자대상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거나 경영에 참여, 자문 및 육성” 하는 것을 추가(안 제52조 제1항 제8호)
 - 자체(수익)사업 수행을 위한 학내 거버넌스 검토 결과, 자체(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적절함을 확인함
 -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일종의 지주회사업)의 자체(수익)사업 총괄법인 설립은 현 정관에서도 가능(제52조제1항제8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정관상 수익사업 열거조항(제52조제1항)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관련법인 목록에서 재단법인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재단(2017. 8. 14.자 청산)을 삭제(안 [별표 2])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 개정(안)

■ 자체(수익)사업 총괄법인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52조(수익사업) ① 서울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서비스업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출판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농업, 임업 및 축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p><u><신설></u></p> <p>8.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과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관리인의 주소·성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③ 서울대학교는 필요한 경우 재산을 출자하여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p>제52조(수익사업) ① 서울대학교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 서비스업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출판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농업, 임업 및 축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u>국내외 자회사(상법상 자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 및 투자대상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거나 경영에 참여, 자문 및 육성</u> <p>9.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과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관리인의 주소·성명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p>③ 서울대학교는 필요한 경우 재산을 출자하여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 관련 법인 목록 관련 개정(안)

[별표 2] 관련 법인 목록(부칙 제12조 관련)

현행			개정(안)
명칭	등록번호	법인성립연월일	(좌동)
서울대학교병원	110133-0000634	1978.07.15.	(좌동)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10171-0029767	2004.08.30.	(좌동)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14371-0009224	2004.05.12.	(좌동)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114371-0001276	2001.04.21.	(좌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114322-0000035	1967.02.05.	(좌동)
재단법인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재단	114322-0000209	1995.05.30.	(삭제)
재단법인 서울대학교공과대학교육연구재단	114322-0000077	1986.06.18.	(좌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교육연구재단	130122-0001361	1989.08.24.	(좌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	114322-0029887	2002.12.31	(좌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구재단	114322-0000241	2002.07.30.	(좌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약학대학교육연구재단	114322-0000051	1983.03.22.	(좌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육연구재단	110122-0002584	1980.12.13.	(좌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교육연구재단	110122-0026930	1994.04.01.	(좌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보건연구재단	110122-0002336	1979.02.19.	(좌동)
재단법인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소천교육연구재단	114322-0000275	2000.08.08	(좌동)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35822-0004959	2007.06.07	(좌동)
사단법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14321-0000045	1961.10.11.	(좌동)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강준호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2호. 이사후보초빙위원회 이사위원 구성(안)

□ 주요내용

- 이사 5명(외부 3명, 내부 2명)이 2021년 초 임기 만료로 결원이 예정됨에 따라 후임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초빙위원회 이사위원을 구성하고자 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	----	-----

■ 임기 만료 이사

- 학외 이사(3명): 권오규, 남궁근, 지은희
- 학내 이사(2명): 김형준, 박현애

□ 심의결과

- 전수안 이사장이 위 안전을 발의하고,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후보초빙위원회 이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의결함
 - 위원장: 전수안(이사장)
 - 학외 이사: 이기형, 최창원
 - 학내 이사: 홍기현, 김병섭

4.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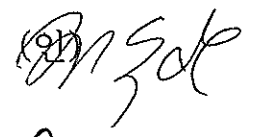
제1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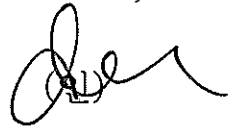
- 2020년 제5차 이사회를 2020. 12. 11.(금)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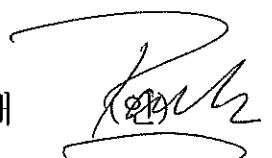
5.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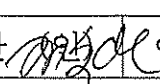


- 보고 및 의안의 심의를 종료하고, 이사장이 오후 6시에 폐회를 선언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